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8 선고 2020가단609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

2. D

3. E(개명 전 이름: F)

변론 종결2020. 5. 18.

판결 선고2020. 6. 8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. 7. 1.부터 피고 주식회사 C, D은 2010. 6. 15.까지, 피고 E은 2010. 9. 25.까지는 연 19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가. 피고 1, 2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나. 피고 3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조상민

별지